

의안번호	2217616
의 퇴 인	안호영의원
회 답 일	2026.3.24.
추 계 번호	26B1605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2(한국환경한림원) 신설	환경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제3항) 1. 기후등 분야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·연구, 정책자문 및 홍보사업 2. 기후등 분야의 학계, 산업계, 연구계,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·협력사업 3.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등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4. 기후등 분야 전문 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(保全)하는 사업 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	의무규정
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59조의2(한국환경한림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사업수행 및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
- 한국환경한림원은 2011년 11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, 환경리더스포럼, 환경원

탁토론회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

- 2026년 기준, 한국환경한림원 추진사업 및 예산은 [표 1]과 같고, 총 사업비는 2억 5,000만원임

[표 1] 한국환경한림원 추진사업 및 예산 (2026년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내용	사업비
환경리더스포럼, 환경정책심포지엄, 환경원탁토론회의 등 행사운영	90
뉴스레터 발간 및 우수 환경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	20
국내외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조사 및 정책자문	40
환경분야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	20
한국환경한림원 운영	80
합계	250

자료: 한국환경한림원

-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한림원이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향후 확대될 사업 및 신규로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